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을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을 “폐플라스틱재활용 원료지정사업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스틱제품생산

자”라 한다)는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의 제조·사용을 플라스틱제품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6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을 삽입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활용가능자원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제12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3%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 $\frac{\text{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text{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신규원료 생산량}} \times 100$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 별 연간 사용량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해당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비고 3. 비고 1에 따른 이용목표율 산정 시 ‘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및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 신규원료 생산량’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5]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2,3,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다만, 폐지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연도별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자

-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자
-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구축 운영실적이 뚜렷한자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PET 제조업)						
제출 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1. 제품생산량						
제품종류		월별 생산량(톤)			합계	
합 계						
2. 제품수출량						
제품종류		월별 수출량(톤)			합계	
합 계						

3.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PET) 사용량

종류 월별	사용량(톤)									
	PET 베일		PET 플레이크		PET 펠렛		기타		합 계 (베일 기준)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합 계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PET 베일, 플레이크, 펠렛,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합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PET 베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 및 인증서 등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는 지정사업자가 제출한 실적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
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
다.

1. ~ 5. (생략)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
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
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

1. ~ 3. (현행과 같음)

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
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
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

1. ~ 5.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

-----.

③ -----

장은 별표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

--- 별표 2-----

-----.

④ -----

--- 별표 3-----

-----.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

<신 설>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 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 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 리대상사업자별 이 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 스틱제품생산자”라 한다)는 회 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 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 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 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 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 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 의 제조·사용을 플라스틱제품 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제12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7조의 규정 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

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장 보칙

<신설>

제15조 (생략)

제16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 별표 5-----.

② -----

--- 별표 5-----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

----- 제14조제1

항-----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장 보칙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3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제18조 (생략)

제19조·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